

##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「예산군 군계획시설(공공공지) 내 예당저수지 기반시설(휴게쉼터) 조성사업」 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01. 13.

예 산 군



### 1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: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신리 311-2번지 일원
- 면적 : 2,267㎡

###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군계획시설(공공공지)사업
- 명칭: 예당저수지 기반시설(휴게쉼터) 조성사업

### 3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예산군수
- 주소: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청

### 4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2025. 01. 13. ~ 2025. 01. 28.(15일간)
- 의견제출: 공익사업 사업인정(의제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이내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방문,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# 5. 열람장소

- 예산군청(미래성장과, 041-339-7732, FAX 041-339-7709)

### 6. 관계서류: 개재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. 끝.